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한 국 농 수 산 식 품 유 통 공 사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791호, 2019. 12. 10. 공포, 2020. 3. 11.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부처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만원”을 “250만원”으로, “40만원”을 “350만원”으로,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6조를 위반하여 한 국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	<u>250만원</u>	<u>350만원</u>	<u>500만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2213